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7. 18 선고 2022가단100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14.

판 결 선 고 2022. 7. 18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. 12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2. 4. 접수 제61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그 내용 중 ‘별지 목록’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김영일

별지